

대전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1046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임지혜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9.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9가단1659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09,200원과 그 중 35,639,2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1,77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C에 지급한 매매대금 38,760,000원(=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 1,290만 원 +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 1,290만 원 + 이 사건 제3토지의 매매대금 1,190만 원) 중 피고에게 변제해야 할 차용금 잔액 3,120,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639,2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② 피고의 실적이 부족해 H의 실적을 피고 앞으로 올려 피고가 받은 수수료 1,77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가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② 부분 청구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① 부분 청구 중에서도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 1,29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만 구하고 있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C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2. 26.까지 합계 296,763,000원을 빌렸는데, 피고에게 갚아야 할 돈보다 1,300만 원 가량(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대물변제 및 피고가 C에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을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을 포함)을 더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만 원 가량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인바, 그 중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C에

지급한 매매대금 1,2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정한 급부를 한 후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려면 급부를 한 자가 급부의 원인을 특정하고 급부의 원인이 부존재한다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그 효력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스스로도 이 사건 제1토지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미등기토지’라고 기재하였는데(2021. 8. 24.자 의견서 제2면), 이는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할 때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대납해 준 것’이라는 주장과 모순되는 점, ② 피고가 원고를 사기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대물변제 포함)이 대여한 금원보다 1,300만 원 가량 초과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러나 위 형사사건의 불기소 이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대물변제 포함)을 단순히 비교한 것일 뿐, 대여시기, 이자약정 여부, 변제시기 및 이에 따른 변제충당액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1,300만 원을 피고에게 초과 지급하였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므로, 실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한 금원보다 1,300만 원 가량을 더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더구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를 한 경우 그 급부의 가치가 본래의 채무보다 부족하거나 크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과부족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초과부분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C에 1,29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매경, 판사 이정호, 판사 신옥영

1) 원고는 이 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1토지 매매대금 12,900,000원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다고 진술하면서도 항소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